

#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경훈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09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김경훈,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박상혁, 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 심미경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병윤, 이상욱, 이은림, 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 장태용, 최민규, 최호정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48명)

## 1. 제안이유

- 수소산업육성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,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수소산업육성위원회 당연직 및 부위원장을 수소산업 업무 담당 국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(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)
- 나.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, 심의·의결후 위원회를 자동해산하도록 규정(안 제11조제3항)
- 다. 의원의 임기 관련 규정 삭제 (안 제11조제3항)
- 라. 위원회의 정기·수시 회의 관련 규정 삭제(안 제11조제5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#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의 부분 중 “국장”을 “부서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장 및 과장”을 “부서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

제11조제5항을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